

의안번호	제72호
의결 연월일	2014년 월 일 (제 336 회)

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4년 11월 3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

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2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14년 11월 3일
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한옥 신축비를 지원받은 자가 준공 후 시세차익을 위한 매도 등 부동산 투기 방지와 당초 지원결정 내용의 임의변경에 대한 대책 등 일부 미비 사항을 개선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당초 지원결정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보조금 환수 조항 신설(안 제20조제2항 1호)
- 한옥 준공 후 3년 이내에 한옥을 매도(증여, 그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)한 경우 보조금 환수 조항 신설(안 제20조제2항 2호)

3. 의안전문 : 불 입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불 입

5. 관계법령 발취 : 해당없음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한옥마을조성 촉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도지사는 제17조에 따른 한옥신축 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액을 환수 할 수 있다.

1. 당초 지원결정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
2. 한옥 준공 후 3년 이내에 한옥을 매도(증여, 그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)한 경우. 다만 상속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0조(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도지사는 제17조에 따른 한옥건축 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 당초 지원결정 내용과 달리 신축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거나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소유자 등에게 지원액 환수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.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20조(지원결정의 취소 및 지원액의 환수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도지사는 제17조에 따른 한옥건축 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액을 환수 할 수 있다</u></p> <p><u>1. 당초 지원결정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</u></p> <p><u>2. 한옥 준공 후 3년 이내에 한옥을 매도(증여, 그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한다)한 경우. 다만 상속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.</u></p>